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0. . .<br>(제 회) |      |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 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 | 국무위원 김현미<br>(국토교통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0.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,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운영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대중교통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법 상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(법제18조제6항)이 공포('20.6.9.)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및 서비스 미흡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시 사전 통보 의무(안 제23조의2)

- 1) 경영 및 서비스 미흡으로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중교통 운영자가 재정지원 제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함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. 00. ~ 2020. 0. 00.) 결과, 특기

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##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(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제한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p>제23조의2(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제한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p>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| (044) 201 - 3826 |